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1회 제2차 정례회 (2021. 12. 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121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6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7일(수)

2. 제출사유

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, 존속기한,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2조~제5조)
- 다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·운용, 이자(안 제6조~제7조)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회의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- 마. 회계공무원,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13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·예탁)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나. 기타

- 1) 입법예고: 2021. 10. 14.~ 11. 3.(제출의견 없음)
- 2) 성별영향평가: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사항 명시

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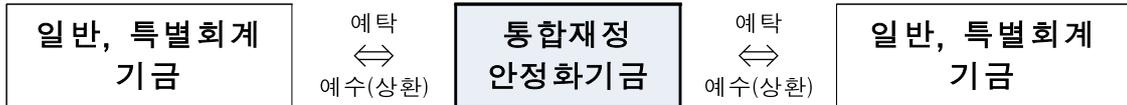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, 그리고 기금 상호 간 여유 자원 또는 기금을 재정 여건에 따라 자금융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이하 “지방기금법”)이 개정됨.
-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이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이 설치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¹⁾를 근거로 설치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·운영하는 특정자금이며,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음.

1)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2)에 의하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(기금) 상호 간 재원을 예탁·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탁·예수는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·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내용

- ▶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(기금)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·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 (지방재정법 제9조의 2, 신설)



- ▶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(예산총액의 1%이내) 설정 (지방재정법 제43조, 개정)
- ▶ 여유자금을 적립·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 설치 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, 개정)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,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음.
- 안 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. 이는 “지방기금법” 제4조3)에 따른 규정임.
- 안 제4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열거하고 있는 바, “지방기금법”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재규정한 것임.

2) 지방재정법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3)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안 제5조는 제1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여 일정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, 제2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, 지방세 등이 감소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 - 안 제7조는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경우에는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,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심의위원회 구성, 운영, 위원 위·해촉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 - 안 제13조는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각각 지정하고 있음.
 - 안 제14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예산계획 수립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- 지방자치단체가 세입·세출간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“재정안정화기금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. 다만,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, 관리부서에서는 재정 운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수·예탁 등 여유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참고자료

1. 관계법령

■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2. 서울시 자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

○ 설치 완료 : 22개구 / 진행중 : 1개구 / 미설치 : 2개구

연번	자치구	조례 제정	시행일	2021년 운용 여부	
				통합계정	재정안정화 계정
1	마 포	진행중	-	-	-
2	종 로	○	2020.11.13.	X	X
3	중 구	X	-	-	-
4	용 산	○	2021.05.14.	○	X
5	성 동	○	2021.09.16.	○	X
6	광 진	○	2020.09.10.	X	○
7	동 대 문	○	2020.10.08.	○	○
8	중 랑	○	2021.11.11.	X	X
9	성 북	○	2020.12.31.	X	X
10	강 북	X	-	-	-
11	도 봉	○	2021.09.16.	○	○
12	노 원	○	2020.11.12.	○	X
13	은 평	○	2020.11.06.	○	○
14	서 대 문	○	2020.11.04.	○	X
15	양 천	○	2020.10.29.	○	X
16	강 서	○	2020.11.18.	○	X
17	구 로	○	2021.11.04.	○	X
18	금 천	○	2021.01.01.	X	○
19	영 등 포	○	2020.11.05.	○	X
20	동 작	○	2020.12.24.	○	○
21	관 악	○	2020.10.22.	○	○
22	서 초	○	2021.09.23.	○	X
23	강 남	○	2020.12.31.	○	○
24	송 파	○	2020.11.12.	○	X
25	강 동	○	2021.01.01.	○	○